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269
----------	-----

제출년월일 1997년 11월 일
제 출 자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및 충청북도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골자

-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설정,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등을 심의함(안 제2조)
-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4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 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상황실장은 기획관리실장이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하도록함(안 제4조)
- 대공침투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도 정함(안 제5조)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및 제17조)

- 붙임 1.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2. 기타 참고자료(관계법령등)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충청북도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5조 제3항 제5호에서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약지역 대비책
2. 통제구역 설정
3.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4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충청북도의회 의장
2.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3. 충청북도교육감

4. 국가안전기획부충북지부장
5.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6. 공군사관학교교장
7. 육군제5019부대장
8. 공군제3579부대장
9. 육군제1987부대장
10. 육군제1673부대장
11. 기무부대장
12. 청주지방병무청장
13. 청주교도소장
14.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간사 : 내무국장
2. 민방위담당간사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3. 심리전담당간사 : 공 보 관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충청북도지사 소속하에 지원본부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 ③ 상황실은 실장과 20인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 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국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 ⑥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장이 정한다.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

2. 재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병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재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 한다.)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